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 처리키로

남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총무위·상임위 9개 안건 심사

남구의회(의장 박영근)는 제226회 임시회를 25일부터 내달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 임시회 회의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명) 회의를 열고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내달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한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손예희)는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주민복지지도위원회(위원장 이진호)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세부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사업을 반영한 2014년 종액인건비 기준인력을 늘립으로써 공무원의 총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등록면제세 정액 세율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관련 세목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국세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부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웹메일시스템 이용을 감소에 따른 운영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 수집운반업 허가를 각각 하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제1항의 규정은 허가를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저촉되므로 이를 개정교부 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기임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편산업발전법(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7. 22.)」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13. 7. 22.)」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확대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오름도 및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정(2013년 9월 1일)으로 간편의 종수령, 표시방법 등이 시(市)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구(區)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區)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폐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



제226회 남구의회 임시회 모습.

알아두면 유익한 자치법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피해학생 보호·기해학생 선도 목적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대책활동 문제에 대해서 유관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기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등과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를 만들어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상호 협의를 하고, 남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본 규정 전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bsnangu.go.kr>)에 접속하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의 「제8편 평생교육」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상식-재적의원과 의사·의결 정족수

의원정원과 재적의원 숫자 같지는 않아

지방의회운영의 이해는 의회용어를 알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회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원수에 대해 알아보자.

재적의원(在籍議員)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의원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재적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원 중에서 사장, 사직, 제명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석의원(在席議員)은 당일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을 말한다.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는 회의(본회의, 위원회)를 시작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수로서 재적의원 1/3이상이며,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면 의장(또는 위원장)은 회의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원수로서, 지방자치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과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정한 인원의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과반수(過半數)라 하며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다. 출석의원이 9인일 경우 과반수 5인(1/2: 4.5인)이상이나 10인일 경우 각각 과반수는 6명, 2분의 1 이상은 5명 이상이 된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운영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명)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했다.

분포·우암초, 어린이의회교실 참여

‘스마트폰 중독예방 조례안’ 모의 제안

주민 감동과 열린 의정을 추구하는 남구의회(의장 박영근)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관내 분포초등학교 6학년 5개반 학생 135명, 그리고 21일에는 우암초등학교 6학년 4개반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조례안 제정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 의회교실을 열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지역구 의원인 박두춘 의원(분포초등학교)과 공명현 의원(우암초등학교)으로부터 특강을 들었다. 이어서 의장과 의원 역할을 부여 받아 학생들이 조례안을 제안하고 질의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조례안 제정 절차에 대해 조례안 제정 절차에 대해서 의사봉을 쳐보고 기념촬영 및 기념품도 받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의회교실에 참석한 한 학생은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역할을 맡아 모의의회를 체험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고, 다음에는 꼭 의원이 되어 실제로 조례안을 제정해 보고 싶다”고 아무진 포부를 밝혔다.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의회교실은 내달에는 용소 대연3동, 용산(용호3동)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용당(용당동)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이미 어린이 의회교실을 신청함에 따라 330여명의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 외에도 학생들 전원이 의장



“남구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희망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구의회 사무국(☎ 607-6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문) 남구 문현동에서 대연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 할 수 있을까요?

답)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014. 5. 13.까지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문)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지?호소의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오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2014. 6. 4.)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문)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나요?

답)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일체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633-7656, fax : 0505-058-222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월 4일(수)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30 ~ 31일
사전투표하세요**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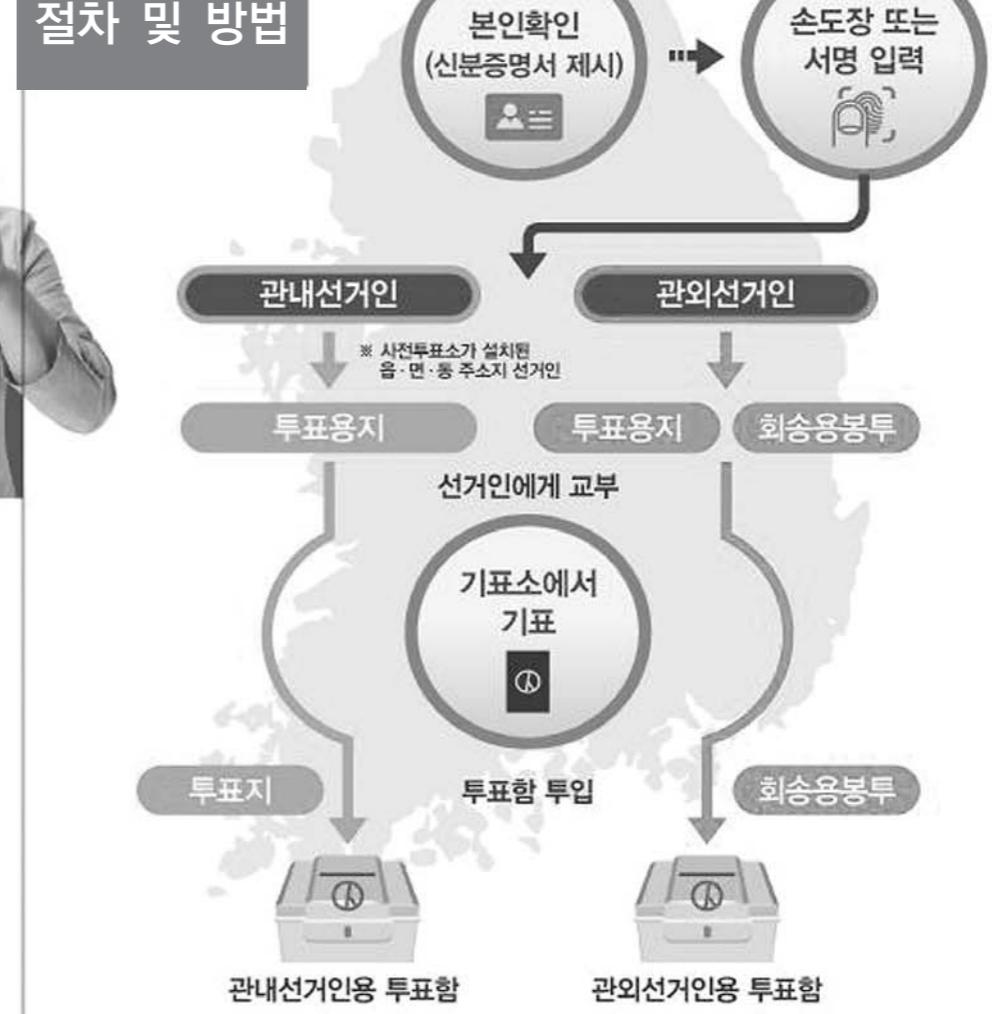
» 투표기간_ 5. 30.(금) ~ 31.(토) 오전6시 ~ 오후6시

» 투표장소_ 3,500여개 읍·면·동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

» 준비 물_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

* 「사전투표」는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전산조작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하여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2013. 4. 24. 새·보궐선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절차 및 방법



남구선거관리위원회